

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 등 실태분석

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 실태 분석을 통해 지나친 외부강의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액 사례금 수수 등으로 인한 부패 발생을 예방

1 관련근거

-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(권익위 행동강령과-2142호, 2015.9.25.)
-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지침 알림(감사2016-2924호,2016.11.18.)

2 외부강의등 신고 개요

- 신고대상 : 대가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모든 외부강의 등
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은 제외
- 신고내용 : 출강일시, 요청사유, 대가금액(실수령액)
- 신고원칙 : 사전신고
 -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외부강의등 수행 금지
 -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을 넘는 고액강의로 수수 금지

[외부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]

구 분	사 장	임 원	그 외 직원
상한액(천원)	400	300	200

*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

- 상한액 초과 대가를 받은 경우 감사실로 신고하고, 초과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
- 대가를 받는 경우 월3회로 횡수 제한

3

2017년 하반기 신고 현황

○ 신고현황 : 총 45건, 9,460,000원

구분	합 계	강의·강연	발표·토론	심사평가자문의결	기 타
건수	45건	13건	-	32건	-
금액	9,460,000원	2,301,200원	-	7,158,800원	-

○ 직급별

구분	합 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이하
건수	45	-	15건	11건	4건	15건
금액	9,460,000원	-	3,127,200원	3,079,800원	963,000원	2,290,000원

○ 최근 3년 비교

구분	2015년		2016년		2017년	
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
건수	20건	19건	17건	27건	14건	45건
금액	7,824,380원	7,358,330원	5,943,650원	9,326,000원	3,838,800원	9,460,000원

○ 신고결과

〈 과다한 외부강의 〉 : 없음

* 1인 최고 11회 출강하였으나, 월 3회 횟수 넘지 않음

〈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초과 수수 〉 : 없음

4

향후계획

- 외부강의등 신고시스템 구축 : 2018. 상반기
- 2018년 상반기 외부강의등 실태 분석 : 2018. 7월